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98 발의연월일: 2025. 3. 6.

발 의 자:김예지·김선교·최수진

김소희 · 서천호 · 고동진

송석준 · 조경태 · 김형동

서명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에 맞추어 종합부동산세를 1년에 2회 부과·납부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86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 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당 연도 9월 16 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신고기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신고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기분	신고기간	
제1기분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분	다음 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을 그 세액"을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분(期分)의 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을"을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해당 연도"를 "해당 기분"으로, "직전년도"를 "직전기분"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신

청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기분	신청기간
제1기분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분	다음 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14조제1항 중 "금액"을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분의 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액"을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분의 세액"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해당 연도"를 "해당 기분"으로, "직전년도"를 "직전기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연도"를 "해당 기분"으로, "직전년도"를 "직전 기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간까지"로 한다.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납부기간(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 과·징수한다.

기분	납부기간	
제1기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2기분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17조제2항 중 "해당 연도"를 "해당 기분"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기분 재산세의 부과자 료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제출기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분	제출기간		
/TT	주택분	토지분	
제1기분	해당 연도 7월	해당 연도 9월	
	31일까지	30일까지	
제2기분	다음 연도 1월	다음 연도 3월	
·	31일까지	31일까지	

제21조제2항 중 "매년 8월 31일까지"를 "제1기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매년 10월 15일까지"를 "제1기분은 해당 연도 10월 15일까지, 제2기분은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9조, 제10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 부담 상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 기분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은 종 전 규정에 따라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을 기초로 계산한 세 부담 상한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조(과세표준) ① • ② (생 제8조(과세표준) ① • ② (현행과 략)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 ③ 제2항에 따른 주택을 보유 한 납세의무자는 다음 표의 구 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 분에 따른 신고기간(이하 이 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조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까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 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 고하여야 한다. 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 고하여야 한다. 기분 신고기간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제1기분 30일까지 다음 연도 3월 16일부터 3월 제2기분 31일까지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 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 -----신고기간까지-----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 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1. ~ 2. (생략)
-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u>금액을</u> 주택분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 1. ~ 3. (생략)
- ③ ~ ⑨ (생 략)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 산세의 납세의무자가 <u>해당 연</u> 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 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 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 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 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 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액을 그 기분(期分)의 세액
1. ~ 2. (현행과 같음)
②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u>.</u>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세부담의 상한)
해당 기
旦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 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 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 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 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제3 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 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 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u>직전 기분</u>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 의무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 른 신청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분	신청기간
제1기분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 , _	30일까지
	다음 연도 3월 16일부터 3월
제2기분	31일까지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 사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u>금액(이하</u> "토 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⑤ ~ ⑦ (생 략)

제15조(세부담의 상한) ① 종합부 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 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 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 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 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종 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u>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u> 는 금액을 그 기분의 세액
<u>는 급격을 그 기단의 세곡</u>
②・③ (현행과 같음)
4
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 분의 세액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세부담의 상한) ①
<u>해당 기분</u>

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 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 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u>직전년도에</u> 해당 토지에 부과 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 로 본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u>해당 연도</u>에 납부하여
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
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
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
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

<u>직전 기분</u>
②
해당 기분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u>직전년도</u>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부과・징수 등) ① 관할세 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 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 다)까지 부과・징수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ž	직전 기분
제16조(부과	· 징수 등) <u>① 관할세</u>
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
부동산세 9	의 세액을 결정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납부기
간(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
	- · 징수한다.
기분	납부기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제1기분	
제2기분	12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刊4/1七	15일까지
② (현행고	가 같음)
③	

-----납부기간까지---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⑤ (생 략)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생 략)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 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 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 ⑤ (생 략)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 ·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 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 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④·⑤ (현행과 같음)
17조(결정과 경정) ① (현행과
같음)
2
<u>해당 기분</u>
③ ~ ⑤ (현행과 같음)

·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기분 재산세의 부과자료 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제 출기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장・군수는 「지방세법」 제11 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 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 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④ ~ ⑥ (생 략)

<u>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u> <u>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u> 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비	제출기간	
기분	주택분	토지분
제1기분	해당 연도	해당 연도
, , –	7월 31일까지	9월 30일까지
제2기분	다음 연도	다음 연도
.,= 1 G	1월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②
제1기분은 해
<u>당</u> 연도 8월 31일까지, 제2기분
은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3
제1기분은
<u>해당 연도 10월 15일까지, 제2</u>
기분은 다음 연도 4월 15일까
<u> </u>
④ ~ ⑥ (현행과 같음)